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7,990,872	6,539,726
일반회계	206,518,334	6,195,550
특별회계	11,472,538	344,176
기타특별회계	11,472,538	344,17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4,627	13,93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29,057	6,872
주차장특별회계	9,735,421	292,063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99,653	23,990
기반시설 특별회계	11,780	353
재정비축진 특별회계	232,000	6,96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80,52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